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10호 2015. 7. 15.(수)

조 례 ○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 -----○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 사천시 관광종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 ----- 16 ○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 33 ○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 37 ○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48 규 칙 ○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9 ○ 사천시 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 56 고시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신고 수리사항 고시 -----회 람

발행 : 사천시.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제410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9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발행 및 형식) 시보는 월 1회 신문형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호는 사천시보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 할 수 있으며 인터넷(시 홈페이지), SNS 등에 시보를 게재할 수 있다. 제4조(편집 및 운영) 사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은 공보감사담당관이 관장한다.

부칙

제410호(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9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직원 중에서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를 "소속 직원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0호(4)

조 례

- 1. 위원 중 3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천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의 규정에 따른"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에 대하여는"을 "에게는"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칙

제410호(5)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9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사 천 시 장 송도 근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7호 중 "해양파출소장"을 "사천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0호를 제11호로, 제1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진주보훈지청장

제5조제1항제4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제6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10호(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9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410호(7)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9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천시 자율방범대" 란 사천시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 2.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 란 제1호에 따른 사천시 읍면·동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10호(8)

조 례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사천시 읍·면·동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 및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조직,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의 담당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약지역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
-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
- 3.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
- 4. 경찰기관에서 요청하는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 5.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와 연합회로 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방범초소 설치 및 운영비
-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
- 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수런대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 4. 그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410호(9)

- 1. 3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4. 방범대 또는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연합회 구성) 읍·면·동 자율방범대 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연합회) ① 연합회는 지역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410호(10)

조 례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에게 「사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시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10호(1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9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광종합자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관광종합자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관광 종합 지원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영케"를 "운영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부채납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기부채납 재산은

제410호(12)

조 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변경할"을 "변경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 2호의 "위반할"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며,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410호(1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9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를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410호(14)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9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8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통상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보통우편"을 각각"일반우편"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등기필증, 등록

제410호(15)

조 례

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으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조제5항에"를 "영 제86조제1항에"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부칙

제410호(1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9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410호(17)

조 례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중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확인		1통	300원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공업, 상업		1통	500원	
(4) 농가, 비농가		1통	5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8)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9)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10)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ʲ	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5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1) 미분배농지		1통	300원	

제410호(18)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통	300원	
(나) 토지도면		1통	300원	
(다) 건물도면		1통	300원	
(3) 공부 및 부본열람				
(가) 기본료		1시간당	1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6)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약	인 신청	1건	5,0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1필지	1,000원	
(나) 컬러발급		1필지	1,5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5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로급	1통	3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	명	1통	300원	

제410호(19)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9. 그 밖의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가)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나)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2) 소방시설 완비증명	1건	500원	
(3)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6)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			
1. 일반행정 관계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3) 공유재산 대부 신청			
(가) 신 규	1건	5,000원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4)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1매	500원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100원	
(6) 그 밖에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2. 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축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매	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3)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	1건	500원	

제410호(20)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4) 잠견매매 주선업의 허가신?	청	1건	1,000원	
(5)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6)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원	
(7) 농어촌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8) 농어촌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	
4. 수산업 관계				
(1)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2)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	}	1건	1,000원	
(3) 근해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4)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5)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	가신청	1건	3,000원	
(6)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 (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1건	1,000원	
(7)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8) 어업권 분할 인가신청		1건	2,500원	
(9) 어업권 변경 인가신청		1건	3,000원	
(10)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11) 관리선 사용의 지정 및 어	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12)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항변경신청	사용승인	1건	1,000원	
(13)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원	
(14)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15) 한시어업허가(허가연장) 신]청	1건	2,000원	
(16)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	2,000원	
(17)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약	면장) 신청	1건	3,000원	
(18)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신청		1건	3,000원	

제410호(21)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9) 내수면 어업허가(자망 연승어업, 패류채취어	어업, 종묘채포어업, 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1건	5,000원	
(20) 내수면 어업면허(양식		1건	9,000원	
(21) 내수면 어업면허(공동	-어업)	1건	7,500원	
(22) 내수면 어업신고		1건	1,000원	
(23) 내수면 어업연장 허기	ት 신청	1건	5,000원	
(2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2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	가	1건	1,500원	
(26) 어업허가사항 변경신.	ਹ	1건	1,500원	
(27) 어업신고		1건	1,500원	
(2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	য	1건	1,000원	
(29) 면허 우선순위 결정신	······································	1건	1,000원	
(30) 먼허신청 기간의 연정) 신청	1건	1,000원	
(31)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	정증(어선사 용승 인증)재발급	1건	1,000원	
(32) 어업휴업(휴업연장),	재개신고	1건	1,000원	
(33)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원	
(34)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	^신 고	1건	800원	
(35) 허가어업 휴업(재개)	신고	1건	1,000원	
(3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	고	1건	800원	
(37) 2중 이상 자망 사용성	군인 신청	1건	4,500원	
(38)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	1건	2,000원	
(39)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40)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3	1건	3,000원	
(41) 수산 동식물의 채포금	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42) 포획. 채취금지 해제	허가	1건	3,000원	
(43) 어업권(지분)이전. 변	경등록	1건	1,500원	
(44)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고	1건	1,000원	

제410호(22)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45) 해상종묘 생산어업 허가신청	1건	4,000원	
(46)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7)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 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8) 낚시 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49)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50) 어획물운반업 변경	1건	2,000원	
(51)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1건	4,000원	
(52) 육상종묘생산업 허가	1건	4,000원	
(53) 육상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변경허가	1건	2,000원	
(54)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2,000원	
(55)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56)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57)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원	
(58)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1건	1,000원	
5.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000원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원	
(9)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업) 신고	1건	10,000원	

제410호(23)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0)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원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원	
(13) 자가용 화몰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1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16)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 건	1,000 원	<증명> 3.(8) 에서 이기
(17) 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	1건	1,000 원	신설
6. 건설 관계			
(1)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허강시공사비 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1건	허가시골사비 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3) 토석,시력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4) 그 밖에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 허가 (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공삼빙똪능 1/1,000	
(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허가	1건	1,000원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9)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건	1,000원	
(10)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원	
(11)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원	
(12)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1건	1,000원	
(1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제410호(24)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15) 옹벽 및 공작물등 출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16)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17)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	1건	500원	
(18)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19)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0)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2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2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23)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건	500원	
(2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7. 보건사회 관계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 (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1건	500원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원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8)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1건 1건	100,000원 100,000원	
(9) 개설허가사항 변경(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나) 일반병원 (개절장조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10)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원	

제410호(25)

太	례
212	니

	ı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1)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 변경 신고 (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20,000원	
(12)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3) 치과 기공소 인정사항	1건	5,000원	
(14)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1건	10,000원	
(1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6)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	1건	10,000원	
(17) 인·허가 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18) 휴·폐업 확인 신청	1건	500원	
(19) 위생처리업 신고	1건	30,000원	
(20)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21)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0원	
(22)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10,000원	
(2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5)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26)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2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5,500원	
(28)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8. 문화관광 관계	_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5)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7)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9)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10) 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원	
(11)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제410호(26)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12)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입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19)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0)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1)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22)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2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30)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2)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3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3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30,000원	
(3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3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38)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39)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변경신고	1건	15,000원	
(4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제410호(27)

구	분 분	기 준	요 액	비고
9.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	부수수료			
(가) 신규		1건	4,000원	
(나) 갱신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1건	2,000원	디마 저애계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3 000 ⊗]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
(/r) 납구선구경 40mm 미년		1 <u>1</u> 1	2, 000원	는공사의 설계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1 로 한다.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4)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10. 체육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1.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12.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		1건	30,000원	
(나) 개인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	2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1건	10,000원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1건	800원	
(5)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이전	선신고	1건	800원	

제410호(28)

조 례

[별표 6]

정보공개수수료(제3조 관련)

27 -10 -10 x1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필름 · 테이프 등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제410호(29)

77 ml - 11 + 1	공개병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마이크로 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 역물) 수수료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제410호(30)

조 례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10호(3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9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10호(32)

조 례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게시판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410호(3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0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사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제410호(34)

- 2.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 3. 소비자단체의 대표
-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사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 6. 사천시 유통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 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및 불법로비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10호(35)

-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4.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쟁
-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10호(36)

조 례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0호(37)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0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대상) 감사 대상은 「주택법」제43조,「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 제3조(감사범위 등) ① 공동주택에 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410호(38)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2.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 ·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5.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조(감사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주택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와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0호(39)

- ③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제5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 2. 감사 대상 및 감사 기간
- 3. 감사 범위 및 감사 사항
-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감사반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 반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410호(40)

-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그 밖에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 주택관리부서와 감사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0호(41)

조 례

제8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개시일 10일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업무)** 감사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항
- 2. 관리주체의 사무·자격에 대한 사항
- 3. 민원·비리·비위 등에 대한 접수 사항

제410호(42)

조 례

- 4.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
- 5.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사항
-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동주택

- 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③ 감사반원은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감사반원은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 2. 감사반의 편성
- 3. 감사총평
- 4. 중점 감사사항

제410호(43)

-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 7. 현지 조치사항
- 8. 특기사항
- 9. 그 밖에 감사 실시 사항
-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0호(44)

조 례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10호(45)

조 례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에 6 년/기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 무	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
감사요청 사항·사유		니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 정보	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천시 공 하여 위와 같이		에 관한 감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 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사천시장 구		정인 대표 (인)
첨부서류	1. 요청인 2. 관련 증	

^1 천 시 공 보

제410호(46)

	조례						
[별ス	[별지 제2호서식]						
			0 *	4 01	он пн	ы	
	-1 -1	- 1	H S	צי צי	연 명	干	
	단 지	명 :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u> </u>	l		l				

^1 천 시 공 보

제410호(47)

조 례 [별지 제3호서식]	
감사결과보고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	

제410호(4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20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 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과장"을 "항공산업과장"으로, "공영개발담당"을 "산단조성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10호(49)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9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제21조2항 및 제36조3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제72조제2항제5호 중 "인감증명을"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로 한다.

제410호(50)

규 칙

제78조의 제목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10호(51)

규 칙

[별지 제1호서식]

	<u>일반우편 송달부</u>								
이 교 교 등	세목	연 되 기 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성 별	세액	주소	반송 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제410호(52)

규 칙

[별지 제46호서식]

(앞 면)

사천시 공고 제 호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국세징수법」 제67조제2항 및 「사천시 시세기본조례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1. 사천시 공고 압류재산 표시

관리 번호	재산의 명칭	소재지	용도 (품질)	종별	수량	매각 예정가격	기타

2. 일괄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공매회차	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매각일시	공고기간
1			
2			
3			
4			
5			
6			

3.공매장소 :

4.입찰결과발표 :

5. 공매 입찰 방법 :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제410호(53)

규 칙

(뒷 면)

- 6. 낙찰자 결정
- 가. 낙찰자는 다음 사항 전부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 ①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액의 입찰자일 것
- ② 최고액 입찰자는 입찰결과 발표 3일 이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③ 입찰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입찰하여 최고액 입찰자로 선정될 시 <u>인감증명서 또는</u> <u>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u>가 첨부된 위임장(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④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에 따른 매수 제한 자가 아닐 것
 - ⑤ 공매재산의 매수에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나 요건 을 구비한 자일 것
- 나.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최고가 입찰자선정(단독입찰 가능)
- 7. 대금납부방법 및 기한
- ①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매수대금을 구청에 납부하여야 함
- ② 매수대금 납부기간은 낙찰가액 2,000만원 이상은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안에, 낙찰가액 2,000만원미만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안에 납부하여야 함
- 8.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입찰보증금을 구청에 귀속 조치 함
- 9.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비용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 10. 공매의 중지
 - 공매 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처분비와 지방세· 가산금을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해야 함
- 11. 기타사항
 - ①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 기준임
 - ② 공매물건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해서는 관할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해야 함
 - ③ 매각물건 중 농지(전·답·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 책임 하에 시전 조사
 - ④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사전에 직접 조사
 - ⑤ 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 의함
 - ⑥ 입찰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은 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제410호(54)

규 칙

[별표]

회계·과목(제12조제2항제3호)

코드번호	세목명	대표세목명	비고
101000	취득세		
101001	취득세(부동산)	취득세	
101002	취득세(차량)	취득세	
101003	취득세(이륜차량)	취득세	
101004	취득세(기계장비)	취득세	
101005	취득세(선박)	취득세	
101006	취득세(항공기)	취득세	
101099	취득세(기타)	취득세	
101501	취득세(부동산)	취득세	
101502	취득세(차량)	취득세	
101503	취득세(이륜차량)	취득세	
101504	취득세(기계장비)	취득세	
101505	취득세(선박)	취득세	
101506	취득세(항공기)	취득세	
101599	취득세(기타)	취득세	
102000	등록세		
102001	등록세(부동산)	등록세	
102002	등록세(차량)	등록세	
102003	등록세(이륜차량)	등록세	
102004	등록세(기계장비)	등록세	
102005	등록세(선박)	등록세	
102006	등록세(항공기)	등록세	
102007	등록세(특별징수)	등록세	
102099	등록세(기타)	등록세	
103000	면허세		
103001	면허세(일반)	면허세	
103002	면허세(차량)	면허세	
104000	주민세		
104001	주민세(개인균등)	주민세	
104002	주민세(개인사업)	주민세	
104003	주민세(법인균등)	주민세	
104004	주민세(종합소득)	주민세	
104005	주민세(양도소득)	주민세	
104006	주민세(법인세분)	주민세	
104007	주민세(농지세할)	주민세	
104008	주민세(특별징수)	주민세	
104009	주민세(재산분)	주민세	
104011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	
105000	재산세		

^1 천 시 공 보

제410호(55)

규 칙

코드번호	세목명	대표세목명	비고
105001	재산세(건축물)	재산세	
105002	재산세(선박)	재산세	
105003	재산세(항공기)	재산세	
105004	재산세(토지)	재산세	
105005	재산세(주택)	재산세	
105099	재산세(기타)	재산세	
105301	재산세(건축물)	재산세	
105302	재산세(선박)	재산세	
105303	재산세(항공기)	재산세	
105304	재산세(토지)	재산세	
105305	재산세(주택)	재산세	
105399	재산세(기타)	재산세	
106000	자동차세		
106001	자동차세(자동차)	자동차세	
106002	자동차세(이륜차)	자동차세	
106003	자동차세(기계장비)	자동차세	
106004	자동차세(주행)	자동차세	
107000	농업소득세	농지세	
108000	도축세	도축세	
109000	레저세	레저세	
109999	토지과다보유세	토지과다세	
110000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111000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112000	주행세	주행세	
113000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114000	등록면허세		
114001	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	
114002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	
130000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	
131000	공동시설세	공동시설세	
132001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세	
132002	사업소세(종업원할)	사업소세	
133000	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	
135000	지역자원시설세		
135001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35002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140000	지방소득세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0002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0003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40004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140011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810000	농특세	농특세	
910000	교육세	지방교육세	

제410호(56)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9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5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환지청산금취급규칙"을 "사천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하여"를 "이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4조1항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이하"법"

제410호(57)

규 칙

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10일이내에"를 "10일이내에"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납부기일"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30일 이내로"를 "30일 이내로"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기일내에 납붙이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기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전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징수"를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 3항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하며, "징수"를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410호(58)

규 칙

제8조제1항 중 "기한만료후 10일이내"를 "기한만료 후 10일 이내"로 하고, "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항의 통지서"를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을 "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90일이내에"를 "90일 이내에"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에 의거 당해"를 "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지급치"를 "지급하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조제2항 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10호(59)

7	치
	_

[별지 제3호서식]

납부통지서

납입의무자	주소		성명	성별	제 호
H H H T / Y					\(\(\)\\\\\\\\\\\\\\\\\\\\\\\\\\\\\\\\
사 업 지 구					
청 산 구 분	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			
납부금액	금			원정	
 징수금명세	종 전 토 지 권 리 가 격	환 지 평 >	정 가 격	징 수	· 결 정 액
0 1 1 0 1					
납 부 기 한		년	월	일	!
납부장소					

위 금액을 기한 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6항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년월일농지개량사업 시행자사 천 시 장 (인)

영 수 증

제 호	납	동	
사 업 지 구			
내 역			
영 수 금 액			
영수 일자	위	년 월 의 환지청산징수금을 정하 년 월	일 히 영수함. 일
영수자		농지 개 량사 업지구	
		환지청산금취급자	(인)

^1 천 시 공 보

제410호(60)

규 칙 [별지 제5호서식]						
		독 촉 장				
제 호	납입통지번호	제	<u> </u>			
환 지 청 산 징 수 액	금		원정			
	징수결정액					
징수금내역	가 산 금					
	합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취급자에게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u>「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u>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합니다.						
		월 일 지개량사업 시행자				
		천 시 장				
주 소	귀	े				

제410호(61)

고 시

사천시 고시 제 2015 - 95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승인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 7. 15.

사 천 시 장

점용사용 승인번호	제2015-1호(2015. 1. 15.)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주 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성 명 사천시장(건설과장)
점용·사용의 목적 (공사내용)	기존 선착장 협소로 선박접안 및 어로활동에 불편이 상존, 태풍시 어선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모(선착장 확장 : 174.7㎡)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경남 사천시 늑도동 557-1번지선 공유수면(신도항)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공사기간)	공사기간 : 2015. 1. 15.~ 2015. 8. 31.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일자	2015. 7. 9.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1 천 시 공 보

제410호(62)

고 시

점용사용 승인번호	제2015-2호(2015. 1. 15.)
점용사용 실시계획	주 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승인을 받은 자	성 명 사천시장(건설과장)
점용·사용의 목적 (공사내용)	기존 선착장 협소로 선박접안 및 어로활동에 불편이 상존, 태풍시 어선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모(선착장 확장 : 174.7㎡)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경남 사천시 마도동 79-2번지선 공유수면(마도항)
점용사용 실시계획 숭인사항(공사기간)	공사기간 : 2015. 1. 15.~ 2015. 8. 31.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일자	2015. 7. 9.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점용사용 승인번호	제2015-3호(2015. 3. 9.)
점용사용 실시계획	주 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승인을 받은 자	성 명 사천시장(도로과장)
점용·사용의 목적 (공사내용)	기존 협소한 물양장 공간확보를 통한 어민들의 어업편익 및 계선곡주 설치로 태풍시 어선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물양장 확장 : 179.8㎡(L=62.4m, B=2~6m)>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경남 사천시 늑도동 502-1번지선 공유수면(초양항)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공사기간)	공사기간 : 2015. 6. 25. ~ 2016. 6. 23.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일자	2015. 7. 3.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